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3

발의연월일: 2020. 6. 11.

발 의 자:서삼석・이용선・윤후덕

김정호・송갑석・장경태

조오섭 · 이개호 · 박 정

이병훈 · 이해식 · 김승남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 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간선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.

그러나, 간선제는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 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,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 는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.

반면,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취하고 있음.

이에 농협의 경우에도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, 1회원 1표를 적용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인 농협중 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22조제5항 및 제12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 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.

제124조제1항 단서 중 "제54조제1항"을 "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장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) 제1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

시행 후 최초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22조(총회) ① ~ ④ (생 략) | 제122조(총회) ① ~ ④ (현행과 |
| | 같음) |
| ⑤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 | ⑤ |
| 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| |
|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| |
|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| |
|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| |
| 행사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 | <u>다만, 제130</u> 조제1항에 |
| |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|
| | 의 경우에는 1표의 의결권을 |
| | 행사한다. |
| 제124조(대의원회) ① 중앙회에 | 제124조(대의원회) ① |
|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| |
| 둔다. 다만, <u>제54조제1항</u> 을 준 | 제130조제1항에 |
| 용하는 제161조에 따라 임원의 |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|
|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| <u>및 제54조제1항</u> |
|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|
| ② ~ ⑥ (생 략) |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|